

[서식 1호]

장학생 지원서

성 명	(한 자)			사 진 3 × 4
생년월일	년 월 일			
소 속	학교 학과 학년			
주 소		E-MAIL		
전화번호		핸드폰	학 생 : 부모님 :	
본인은 귀 재단의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정되고자 소정서류를 첨부하여 지원서를 제출합니다. 20 년 월 일 신청인 (인) 재단법인 가헌신도재단 이사장 귀하				
첨부서류	1.장학생추천서 1부[서식2호] 2.환경조사서 1부[서식3호] 3.서약서 1부[서식4호] 4.성적증명서 1부 5.주민등록등본 1부 6.재학증명서 1부 7.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8.신청인 서약서 1부 9.등록금 영수증 (20년 2학기)			

[서식 2호]

추천서

성명	(한자 :)		
생년월일	년 월 일		
소속	학교	학과	학년
주소		전화번호	- -
학습태도			
재정상태			
기타의견			

상기 학생은 귀 재단의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한 장학생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추천하오니
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 년 일 일

학교(총)장 (인)

재단법인 가헌신도재단 이사장 귀하

서 약 서

본인은 귀재단의 장학생으로 선정된 영예를 명심하고 귀회 규정 및 기타
이행사항을 준수하며, 학업에 충실하여 국가와 사회에 유익한 인재가 되도록
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.

20 년 월 일

장학생	소 속	학교	학과	학년
	성 명	(인)		
보호자	주 소			
	학생과의 관계			
	성 명	(인)		
재단법인 가헌신도재단 이사장 귀하				

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조회 동의서

본인은 재단법인 가현신도재단 학자금지원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또는 제공·조회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1.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	
수집·이용 목적	학자금지원 (장학 또는 대출) 이종지원 확인·반환(상환)안내 ■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발 및 적격여부 판단 ■ 민원 처리 ■ 법령상 의무이행 등 ■ 이종지원 판단 및 확인 ■ 이종지원사유 해소를 위한 안내 ※ 이종지원 : 동일학기에 두 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등록금을 초과하여 이종지원 받은 경우
수집·이용 항목	■ 개인식별정보 :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, 소속학교, 주소, 전자우편 주소, 전화번호 등 연락처 ■ 학자금지원정보 : 지원상품종류, 지급일시,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 등 학자금지원 내역 정보 ※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(신용)정보도 포함됩니다.
보유·이용 기간	위 개인정보는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고등교육기관 졸업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·이용됩니다. 단, 졸업 이후에도 민원처리, 법령상 의무이행에 따라 위하여 보유·이용할 수 있습니다.
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	위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,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학자금지원 신청·선정·지급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수집·이용 동의 여부	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(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 ☐)
	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고유식별정보: [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외국인등록번호] (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 ☐)
2. 제공·조회에 관한 사항	
제공·조회대상 기관	■ 국가, 관계행정기관(행정안전부, 국방부, 보건복지부, 기획재정부, 법무부, 외교통상부, 국토해양부,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그 산하기관) ■ 법원행정처 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 ■ 한국장학재단,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■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(상사법인, 민사법인,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)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■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 공기업 ■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■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」에 따른 기능대학, 「평생교육법」 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·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 ■ 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■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■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정하는 공직유관단체 ■ 업무위탁업체에 대한 제공 - 수집·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
제공·조회 목적	학자금지원 (장학 또는 대출) 이종지원 확인·반환(상환)안내 ■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발 및 적격여부 판단 ■ 민원 처리 ■ 법령상 의무이행 등 ■ 이종지원 판단 및 확인 ■ 이종지원사유 해소를 위한 안내
제공·조회 할 개인정보 항목	■ 개인식별정보 :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, 소속학교, 주소, 전자우편 주소, 전화번호 등 연락처 ■ 학자금지원정보 : 지원상품종류, 지급일시,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 등 학자금지원 내역 정보 ※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(신용)정보도 포함됩니다.
보유·이용 기간	위 개인정보는 제공·조회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고등교육기관 졸업시까지 위 제공·조회 목적을 위하여 보유·이용됩니다. 단, 졸업 이후에도 민원처리, 법령상 의무이행에 따라 위하여 보유·이용할 수 있습니다.
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	위 개인정보의 제공·조회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,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학자금지원 신청·선정·지급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제공·조회 동의 여부	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(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 ☐)
	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고유식별정보 : [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외국인등록번호] (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 ☐)

성명: _____ 서명 또는 (인)
 (주민등록번호 : _____)

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, 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고객 권리 안내문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듣고 수령하였습니다.

신청인 서약서

본인은 재단법인 가헌신도재단(이하 '가헌신도재단')의 학자금지원(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등) 신청인으로서 가헌신도재단으로부터 학자금지원을 받는 동안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. 또한 본인이 한 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학자금 지원금에 대해 즉시 상환 또는 반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<이중지원의 범위>

구분		종 류
중복지원 해당 학자금 지원기관		■ 국가, 관계행정기관(행정안전부, 국방부, 보건복지부, 기획재정부, 법무부, 외교통상부, 국토해양부,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그 산하기관) ■ 법원행정처 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 ■ 한국장학재단,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■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(상사법인, 민사법인,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)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■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 공기업 ■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■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, 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」에 따른 기능대학, 「평생교육법」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·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 ■ 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■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■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정하는 공직유관단체
학 자 금 중 류	대출	(예시) ■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- 든든학자금(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), 일반상환학자금(WEST 포함),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■ 타기관 학자금 - 공무원학자금 대출(공무원연금공단),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(국방부),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(국가보훈처),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(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), 근로자학자금 대부(한국산업인력공단, 근로복지공단) 등
	장학금	(예시) ■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-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I·II 유형, 대통령과학장학금, 대통령드림장학금, 국가우수장학금(이공계 및 인문사회계), 국가연구장학금(이공계 및 인문사회계),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, 사랑드림장학금 등 ■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■ 정부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, 지자체, 민간장학재단, 기업,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- 군장학금, 국가유공자장학금, 하이서울장학금,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등
	기타 학비 지원	■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학비 지원 -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'학비 지원제도'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
중복지원 예외사항		■ 근로장학금, 멘토링장학금, 연구(보조)원 수당, 식비,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, 교육 훈련비, 연수 체재비, 기숙사비,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※ 단,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(등록금 감면)인 경우는 불인정 ■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

년 월 일

성명 :

(서명 또는 인)